

심사보고서

-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안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안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안

심사 보고서

의안 번호	366
----------	-----

2016. 5. 4.(수)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나. 제출일자 : 2016년 4월 18일
- 다. 회부일자 : 2016년 4월 19일
- 라. 상정일자 : 2016년 4월 27일
 - 제3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 · 의결
-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박은상 행정국장)

가. 제안사유

-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충청북도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 보장과 자립 지원근거 마련을 통한 청년의 권리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7조)
- 청년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안 제10조)
- 청년의 참여확대, 능력개발, 고용확대, 주거 및 생활안정, 문화 활성화, 권리보호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안 제16조)
- 청년희망센터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3. 검토보고 요지

- 이번 조례는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충청북도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 보장과 자립 지원근거 마련을 통한 청년의 권리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 구성을 보면 총 2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6조~안 제7조)과 청년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9조~안 제10조), 청년의 참여확대, 능력개발, 고용확대, 주거 및 생활안정, 문화 활성화, 권리보호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안 제16조), 청년희망센터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법령 및 조례 제정현황을 보면, 현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외에 청년 관련 법령은 없으며, 타 시도의 조례 제정 현황은 서울특별시¹⁾ 등 6개 광역시도에서 청년 기본 조례가 제정·시행 중에 있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동법시행령은 청년의 범위를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에서 24세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해 조례안에서는 청년의 범위를 15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하였는데 최근 고학력 중심의 사회로 변화하고, 취업준비기간이 길어지면서 평균 취업연령도 상승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적절하다고 사료됨.
- 다만 안 제17조 청년희망센터 구성과 운영 및 같은 조 제2항 3호에 있는 청년광장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1)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 청년지원 관련 업무는 광범위하고 향후 계속 증가하리라 전망 됨.
- 청년 기본 조례는 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만을 규정하고, 청년위원회나 청년광장 등의 사업은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는 것이 필요함.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청년 기본조례안」

의안번호	제 366 호
의 결 연 월 일	2016년 월 일 (제 347 회)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6년 4월 18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안

의 안 번 호	366
------------	-----

제출연월일 : 2016년 4월 18일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1. 제안사유

- 경제 · 사회 ·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충청북도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 보장과 자립 지원근거 마련을 통한 청년의 권리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6조~안 제7조)
- 청년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9조~안 제10조)
- 청년의 참여확대, 능력개발, 고용확대, 주거 및 생활안정, 문화 활성화, 권리보호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안 제16조)
- 청년희망센터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3. 의안전문 : 불 임

4. 관계법령 발췌 : 불 임

5. 비용추계서 : 불 임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충청북도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청년의 권리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가 스스로의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리증진 및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리증진 및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범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리증진 및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또는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광장”이란 청년의 눈높이로 청년정책을 모니터링하고, 현장 취재, 조사·연구 및 집단토론 등을 통하여 청년의 목소리를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청년단체를 말한다.
6.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청북도는 다른 조례를 제·개정할 경우에는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개정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가. 청년의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

마. 청년문화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호

사.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4. 충청북도 청년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도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공고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제9조에 따른 충청북도 청년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청년정책연구 등) 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거나 청년정책 연구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제9조(충청북도 청년위원회)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청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청년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행정·경제·복지·문화 등 관련 부서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2.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3.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⑧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⑨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⑩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분과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되, 정책분야별 분과회의의 구성 시 청년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⑪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업무부서의 장이 된다.
-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가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심의대상 안건이 위원 본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도지사는 청년의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① 도지사는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한다.

② 도지사는 취업애로 및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청년의 고용 확대 등) ① 도지사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하여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방안을 강구한다.

③ 도지사는 창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창업기반 조성대책을 강구한다.

④ 도지사는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

제14조(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 등) ① 도지사는 청년의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 등의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한 금융소비자 교육과 상담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에는 결혼, 출산, 보육 및 교육 등에 관한 지원

을 포함한다.

제15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① 도지사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청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

② 도지사는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하여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청년의 권리보호 등) ① 도지사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청년희망센터 구성·운영)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발굴·연구·추진을 위하여 청년희망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희망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희망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참여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3. 청년의 의견수렴 등을 위한 청년광장 구성·운영

4. 그 밖의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청년희망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청년희망센터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청년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년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9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시·군, 관계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0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청년의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돋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자·통신기술 및 의약품 등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매체물과 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국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환경 감시·고발 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민간의 전의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규제할 때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청소년의 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운영하는 수송시설·문화시설·여가시설 등을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청소년에게 그 시설의 이용료를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보조를 받는 자
 2. 관계 법령에 따라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으려는 청소년은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학생증, 제4조에 따른 청소년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청소년의 나이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려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 · 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 · 규칙의 제정 · 개정 · 폐지 및 그 운영 · 관리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

□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사업)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도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 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제2조(적용)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규칙 및 일시적으로 긴급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각종위원회로 한다.
② 각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 및 발전에 기여
 -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청년위원회 운영, 청년희망센터 및 청년의 광장 운영, 청년시설의 설치 운영, 청년단체와 청년 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재정적 지원 등

2. 비용 발생 요인

- 청년위원회 운영 소요 사업비
- 청년희망센터 운영 소요 사업비

3. 관련조문

-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제9조(충청북도 청년위원회), 제17조(청년희망센터 구성·운영)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청년위원회 및 청년희망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기초로 산출

나. 추계 결과

- 청년위원회 운영비 : 30,000천원 (매년)
- 청년희망센터 운영비 : 100,000천원 (매년)

다. 재원조달방안

- 청년위원회 운영수당 및 운영비 : 도비(100%)
- 청년희망센터 운영비 : 도비(10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6. 작성자 : 청년지원과장 신 강 섭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계
세 입						
세 출	130,000	130,000	130,000	130,000	130,000	650,000
청년위원회 운영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청년희망센터 운영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재원 조달	130,000	130,000	130,000	130,000	130,000	65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30,000	130,000	130,000	130,000	650,000
	지방세	130,000	130,000	130,000	130,000	65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시 · 군비						
기 타 (민간 자부담)						